

24. 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내규

제정 : 2005. 10. 28.

개정(제6차) : 2020. 1. 1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석사과정 입학 후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으로의 학위과정 변경 및 통합과정생의 통합과정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대상학과) 현재 일반대학원내의 통합과정이 개설된 학과와 협동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학위과정 변경 절차 및 신청자격) 석사학위과정생이 통합과정으로 변경을 원하거나 통합과정생이 통합과정 중단을 원할 경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 또는 사전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학위과정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생이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

- 가. 석사 2학기 또는 석사 3학기를 마친 자(석사 2학기 말 또는 석사 3학기 말에 신청). 단, 석사 4학기 이상인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 나. 석사 2학기인 자는 18학점 이상, 석사3학기인 자는 27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 학기 통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3/4.3 이상인 자
- 다. 해당 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 라. 대학원장은 각 대학으로부터 추천 또는 사전승인된 학위과정 변경 승인 요청자에 대하여 잔여정원을 검토한 후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통합과정생이 통합과정 중단을 원하는 경우

- 가. 통합과정 3학기 이수예정자 및 3학기이상 이수자가 통합과정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해당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사전승인 하에 통합과정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 중단신청은 3학기 말부터 7학기말까지 매학기 말에 신청할 수 있고, 8학기 이상인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 나. 대학원장은 각 학과에서 사전승인한 통합과정 중단 신청자에 대하여 잔여정원을 검토한 후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다. 통합과정 중단 최종승인자는 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 수여를 할 수 있다.

제4조(등록) 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8조(등록 및 등록금)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재학연한 및 학점인정) ①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된 학생의 경우,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한다

- ②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학점은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다.

제6조(학위 논문 및 수여) ① 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준한다.

- ② 학위 수여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에 준한다.

제7조(준용규정)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재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10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201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5조 제2항)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1항,2항)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대상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한다.